- 1. 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상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목적이 있다.
- 2.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3. "을" 은 물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'소비자분쟁해결기준' 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,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.
- 4. "을" 은 "갑" 이 노인요양시설(\*)에 입소 중이거나,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, 만약 "갑" 이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"갑" 이 부담한다.
  - (\*) 노인요양시설 : 장기요양기관 및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(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, 운영되는 시설 포함)
- 5. "갑"은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,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.
- 6. "갑"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7. 계약자("갑")의 의무
  - 가. "을" 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,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.
  - 나. "갑"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  - 다.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, 입원/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"을" 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.
- 8.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"갑" 과 "을" 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,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.
- \*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, 날인 후 계약자 쌍방이 본 계약서를 각 1통씩 보관한다.
- \* 복지용구 공급계약 체결 시 제품의 일련번호(바코드)가 추가/수정하는 것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, 이에 수급자 본인은 동의한다. ([ ] 동의함)

계약일 : 2021년 04월 07일

(갑) 수급자: 기초1 (서명) 대리인: (서명)

(을) 사업체: (주)다온테크 대표: 최재호 (서명)